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기 획 재 정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국제조세 법령과 조세조약 개정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제실에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대신 조세법령 운용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감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채시장 선진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범정부 혁신조달 추진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재무결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및 외화유동성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정원 35명(8급 3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31명)하고,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

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9명(5급 6명, 6급 2명, 9급 1명)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9.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4명”을 각각 “5명”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110명”을 “109명”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085”를 “1,0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74”를 “1,07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7”을 “38”로, 3급 또는 4급 이하 “1,033”을 “1,030”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을 “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7”을 “2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을 “25”로 한다.

별표 3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세제실 1개 정책관등	1명
----------------	----

별표 3의2의 제목 중 “제31조제4항·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중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획재정부의 정원 9명(5급 6명, 6급 2명, 9급 1명)과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세제실) ① 세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 등 4명을 둔다.	제15조(세제실) ① ----- ----- -- <u>5명</u>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② ----- <u>5명</u>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생 략)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110명</u> 을, 3 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 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 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 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u>109명</u>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	<삭 제>

축추진단) ① 기획재정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
호에 따라 2022년 10월 31일까
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
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추진단
(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
되, 제2차관의 소관으로 한다.

1.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관련
사용자 교육 및 업무지원 체
계 마련
3.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방안 마련
4.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과 다
른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재정·행정·통계 관련 정보
시스템 간의 연계
5. 공공부문 재정정보 통합 공
개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6.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 개선 검토

7.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별표 3의2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한시정원) ①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제34조(한시정원) <삭 제>

<u>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u>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u> <u>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u> <u>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u> ②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85</u>	<u>1,083</u>	-2
•	•	•	
•	•	•	
일반직 계	<u>1,074</u>	<u>1,072</u>	-2
고위공무원단	<u>37</u>	<u>38</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033</u>	<u>1,030</u>	-3
•	•	•	

[별표 2]

기획재정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7</u>	<u>26</u>	-1
일반직 계	<u>27</u>	<u>26</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6</u>	<u>25</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8